

2024년 제5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재공고) 공고

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경상남도지사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연번	근무예정부서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	채용직군
계	2개 부서	1개 분야	2명	<가>직군 : 2명
1	김해동부소방서	식당조리원	1명	<가>직군 현업실무원
2	함안소방서		1명	

2. 응시자격 및 가점부여 요건

○ 공통자격 요건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 관리 규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80조제1호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8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 : 60세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거주지 제한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하여 현재 경상남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주소지 합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주기간은 “역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민법」 제160조)
-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 필수 응시자격 및 개별 가점부여 요건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가점부여 요건	점수표(최대 4점 이내)	
	<p><필수요건></p> <p>「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제출서류</u> : 보건소 발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원본) - <u>제출시기</u> :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제출 시 		
식당조리원 (김해동부소방서, 함안소방서)	<p>급식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조리업무 근무경력</p> <p>*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집단급식소</p> <p>* 위탁 급식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u>실제 근무한 기관(업체)명이 기재된 경력증명서</u> 제출</p> <p>* <u>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u> 제출</p>	<p>24개월 이상</p> <p>13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p> <p>6개월 이상 ~ 13개월 미만</p>	<p>2점</p> <p>1점</p> <p>0.5점</p>
	<p>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p> <p>* 2개 이상 소지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점부여</p>	<p>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p> <p>조리기능사</p>	<p>2점</p> <p>1점</p>

○ 공통자격요건, 필수자격요건, 개별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안내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함
- 다만, 자격 및 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예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자격증은 사본, 경력증명서 ·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등은 원본 제출 기한 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가 미비하거나 미제출시에는 불인정

구 분	증빙자료	제출 및 증빙 요령
공통자격요건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변동이력 전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및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필수자격요건	건강진단결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조리원 분야 필수요건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근무경력 가점	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주 20시간 근무 등) ▶ 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를 별도 첨부
자격증 가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사본(기술자격증 등)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 2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점부여

3. 주요 직무내용 및 근무시간

○ 주요 직무내용

근무예정부서 (채용분야)	주 요 업 무
김해동부소방서, 함안소방서 (식당조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전처리·관리, 음식 조리 및 배식, 위생관리 등

○ 근무시간

연번	근무예정부서 (채용분야)	근 무 시 간
1	김해동부소방서 (식당조리원)	<p>○ 주6일(월~토) 근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09:00 ~ 18:30, 연장근무 30분 및 휴게 1시간 포함 - 토 09:30 ~ 18:30, 연장근무 8시간 및 휴게 1시간 포함
2	함안소방서 (식당조리원)	<p>○ 주5일(월~금) 근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00~19:00, 연장근무 1시간 및 휴게 1시간 포함

※ 근거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46조(근로시간)에 의거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8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4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의거 소속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공무직노동자 등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공통요건 기준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 응시연령 충족 여부, 직무수행 관련 필수 및 개별 가점부여 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기준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공통 요건을 충족한 전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처리
- 선발예정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개별 가점부여 요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선발예정인원의 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 인 원	서류전형 합격자	결 정 기 준
1명	7배수 이내	<p>① 서류전형 개별가점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있어 배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동점 인원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단,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p> <p>② 응시인원이 서류전형 합격자의 배수 기준 이내일 경우 또는 서류전형 개별가점에 해당하는 자가 전혀 없을 경우 응시자 공통자격 요건에 적합한 인원은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p>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 검사 진행^{*}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
- 개인별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및 기간 안내

○ (면접시험)

- 면접대상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 평가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의 검증을 위해 아래 5개 평정항목에 대해 평가함(총점 100점 기준)
 - ① 공무직노동자로서의 정신자세 및 건강상태(25)
 - ② 채용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0)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15)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

※ 면접위원 중 회피(기피) 신청(피신청) 시 처리 방안

회피(기피) 신청한(된) 면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값까지 반영(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위원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와 개별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제출서류 10번 참고)를 우선하여 선발
 - 그 외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우선순위
 - (1순위) 면접시험 총점 고득점자
 - (2순위) 면접시험 배점이 높은 평정항목 순 고득점자
- ※ 채용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0), 공무직노동자로서의 정신자세 및 건강상태(25) 등 순
- (3순위) 개별가점 고득점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점수 100점 중 60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항목 5개 항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요소별 배점의 60% 이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남채용'란 게시

5. 시험일정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4. 11. 1.(금)	11. 13.(수) ~ 15.(금) 업무시간 내(09:00~18:00)	12. 10.(화)	12. 16.(월) ~ 17.(화)	12. 27.(금)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경남채용'란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불임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응시수수료 : 없음
- 접수기간 : '24. 11. 13.(수) ~ 15.(금) 09:00~18:00 ※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장소 : 경남도청 민원접견실(본관 1층)

※ 등기우편주소 :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상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택배,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
 -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055-211-3529) 확인 후 송부
 - ❖ 응시표 회신을 위한 일반 편지봉투 동봉(등기용 우표부착, 수신인 성명·주소 기재)

7. 제출 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불임 양식)
- ② **응시원서 1부**(불임 양식)
 - ▷ 응시부서, 응시분야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중복응시 불가
- ③ **이력서 1부**(불임 양식)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불가)
- ④ **자기소개서 1부**(불임 양식, A4 3매 이내)
- ⑤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 변동내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발급일 기준
- ▷ 경력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별도 첨부(**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등**)
- ▷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할 경우에 경력 인정 원칙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점 해당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식당조리원 분야 응시자는** 위탁 급식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관(업체)명이 기재된 “경력증명서”**와 실제 근무한 기관(업체)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제출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증명서류 미제출시 가점 미인정)

⑧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유효한 것

⑨ **최종학력(졸업) 증명서(원본) 1부**

⑩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해당 분야의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적용되지 않으나, 전형별 합격자 결정 시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⑪ **동일계통 학과(학위) 증명서(원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상기 개별 가점부여 요건 중 학위 관련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관련 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다만, 개별가점 미해당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⑫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⑬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양식)

⑭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붙임 양식)

⑯ 기타 개별 자격요건, 가점 관련 서류 등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
-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채용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되며, 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이 취소됨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 재공고의 경우 1차 공고 응시자는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

9. 보수 수준 및 신분 보장

- 근 거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적용(이하 "규정")
 - 임 금 : 매년 도지사가 결정(규정 제69조)
 - 정 년 : 60세까지(규정 제76조)
 - 근로계약 : 소속부서의 장과 공무직노동자 간 체결(규정 제39조)

10.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경력은 채용 후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 이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및 파기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응시자격 검증,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계약해지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무직노동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따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경남채용'란 게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채용시험절차 관련 문의 :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055-211-3529)
 - 직무내용, 근로조건, 보수 등 관련 문의

연번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채용분야	연락처
1	김해동부소방서 (김해시 김해대로 2507)	식당조리원	055-320-9214
2	함안소방서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식당조리원	055-580-9215

끝.